

2019년 국가기술자격 주요변경 사항 안내

□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강화

- 신분증 미지참자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시 **붙임 “규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인정

★ 주의사항 : 규정 신분증은 사진·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불가 전자·통신기기 소지·착용 시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하며,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제반여건 조성이후 단계적 적용 예정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기종 : 붙임 및 Q-Net 공지사항 참조)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

-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 가상계좌 입금마감시간 변경 (타 결제방법은 전과 동일)

구 분	현 행	개 선	
		접수당일 13시 까지 접수	접수당일 13시 이후 접수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익일 14시	접수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원서접수 마감일	익일 14시	접수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사용 불가

< 신분증 범위 기준 >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시 아래 “규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인정

★ 주의사항: 신분증은 사진·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구 분	신분증 인정범위
성인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 ⑥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중·고등학생	① 학생증 ☞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 ☞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③ 여권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⑥ 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 가능
초등학생	① 재학증명서 ☞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② 여권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④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⑤ 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미취학 아동	① 여권 ②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③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 “별지서식2”에 따라 우리 공단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사병 (군인)	①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별지서식1”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외국인	① 여권 ② 외국인등록증 ③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④ 영주증 ⑤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 훼손·변형: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 19년 3월 기준 >

기관	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전문사무, 기능사 전종목 <482종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발전·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 <3종목>
영화진흥위원회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2종목>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3종목>
한국전파진흥원	정보통신 기술사·기사 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통신설비 기능장, 통신선로 산업기사·기능사, 통신기기 기능사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16종목>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기술사·기사,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원관리 기술사, 시추기능사 <7종목>
대한상공회의소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워드프로세서, 한글속기1·2·3급, 비서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전자상거래관리사1·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15종목>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2종목>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연이은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으로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위축·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통신기기 관리를 강화·운영함을 안내·공지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통신기기(사례)

①휴대폰, ②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③테이블릿, ④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⑤MP3 플레이어, ⑥디지털카메라, ⑦카메라 펜, ⑧전자사전, ⑨라디오, ⑩미디어 플레이어 등

2.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1)신분증, (2)수험표, (3)필기구, (4)수정 테이프, **(5)시각표기 기능만 있는 시계***, (6)전자계산기, (7)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8)간식” 이외물품은 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

* 예시 : 아날로그시계, 단순 전자시계 등

따라서, 물품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귀중품 등의 소지·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람.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으로 2019. 1. 7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변경 안내

19. 1. 1.부터 적용되는 공학용계산기 기종제한은 “기능사” 등급부터 적용되며,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등급은 제반 여건 조성이후 재공지할 예정이오니 수험자께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19. 1. 1부터
-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전 종목 수험자
- 주요내용 :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

-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연번	제조사	허용기종군	비고
1	카시오 (CASIO)	FX-901 ~ 999	
2	카시오 (CASIO)	FX-501 ~ 599	
3	카시오 (CASIO)	FX-301 ~ 399	
4	카시오 (CASIO)	FX-80 ~ 120	
5	샤프 (SHARP)	EL-501 ~ 599	
6	샤프 (SHARP)	EL-5100, EL-5230, EL-5250, EL-5500	
7	유니원 (UNIONE)	UC-600E, UC-400M	
8	캐논 (Canon)	F-715SG, F-788SG, F-792SGA	

* 국가전문자격(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은 적용 제외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EX 등)은 무관하나 SD라고 표기된 경우 외장메모리가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 불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별지서식1>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사진(3×4cm)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소 속	
	재학(직)기간 <예정>	~
<p>위 사람은 본 교(부대)의 재학생(부대원)으로서 상기 인적사항(사진포함)에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p> <p>년 월 일</p> <p>발급기관 : (직인)</p>		
발급담당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 유의사항

- 부착된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 테이프(투명)로 부착하여야 합니다.
- 직인 란에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개인도장 불가)
- 허위로 작성·발급 시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신분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입니다.